

---

# 한국문화정보원 정관

---

2025. 4. 23

 **KCISA 한국문화정보원**

# 목 차

정관 .....	1
----------	---

# 한국문화정보원 정관

제정 2025. 04. 23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정보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정보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정보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발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① 정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범위를 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 ① 정보원에 정보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은 당연직이사가 되고, 그 밖의 비상임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6호의2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
3.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제355조 및 제356조의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 시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 임원을 선임하여

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원장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 및 선임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 제7조에 따라 지명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는 비상임이사 중 호선 된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보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의 결의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요구
3. 이사회에 출석, 발언
4. 정보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이사회에 지체 없이 보고
5. 회계감사결과의 결산이사회에의 보고
6. 제4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이사의 소집 요구
7. 이사회 의사록의 확인

⑤ 감사는 제4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적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경우에는 감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임원의 신분보장)** 정보원의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규정 그 밖에 적법한 이사의 결의를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정보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정보원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를 통한 해임 사유가 아니면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① 정보원의 임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정보원의 임직원(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및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임직원의 직무 수행상 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조직)** 정보원의 조직·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이사회

**제18조(이사의 설치 및 구성)** ① 정보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5. 자금의 차입, 기본재산의 취득, 변경 및 처분 등
  6.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
  7.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사항
  8.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9. 정관에 따라 이사회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영리·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과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릴 수 있다.

**제21조(의결)**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위한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사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정보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③ 당연직 이사는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서면심의·의결)** ① 이사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서면심의회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 ① 의장은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정보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사회 회의경과 및 결과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의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운영재원)**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기본재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4. 찬조금, 차입금, 후원금 또는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정보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표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정보원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정보원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보원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정보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정보원의 임원
2. 정보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정보원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정보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8조(차입금 등)** 정보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정보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회계원칙)** 정보원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정보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결산서 제출)** ① 정보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분 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집행실적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4. 감사 의견서
5. 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액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제5장 보칙

**제33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보원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경영공시)** 정보원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정관의 변경)** 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정보원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법인에 출연한다.

**제37조(내부 규정의 제정)** ①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원장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및 회계규정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① 정보원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발명권·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된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부 칙(2025. 04.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에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문화기본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해산하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승계한다.

**제4조(임·직원 등)**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으로 해산되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문화기본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설립 당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임원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업연도)**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등기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당해연도 초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사업계획을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위	성명	주소	날인
발기인 대표	정운현		
발기인	이정미		
발기인	임희석		
발기인	양경모		
발기인	김범환		

[별표]

재산목록

재산구분		수량	평가액	비고
기본재산	현금		1,000,000	설립출연금
	계		1,000,000	
보통재산				
	계			
합계			1,000,000	